

의안번호	2202217
의 퇴 인	박덕흠의원
회 답 일	2024.10.23.
추 계 번호	24D229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 인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의료지원 확대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추가재정 소요는 2조 4,448억원(연평균 4,890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수당 인상	3,293	3,141	2,997	2,859	2,724	15,015	3,003
배우자 승계	624	1,212	1,768	2,292	2,785	8,681	1,736
의료지원	185	165	148	133	120	752	150
합계	4,102	4,519	4,914	5,284	5,629	24,448	4,8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함(제7항)	의무규정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8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의2(권리의 보호)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받을 권리가 승계됨	의무규정
3	안 제7조(의료지원)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과 그 외의 위탁의료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0	-
2	안 제6조의2(권리의 보호)	0	-
3	안 제7조(의료지원)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계에서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수급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수급권리를 승계할 경우 및 의료지원을 배우자에게 확대할 경우, 유배우자율은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 72.1%를 적용
-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 관련 기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승계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추계에서는 법 공포 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이후부터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 동안의 기간을 추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

가. 참전명예수당을 1인가구 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 인상(안 제6조제7항)

(1) 대상자 수

- 참전명예수당 수급대상자는 2023년 연말 기준 13만 2,479명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7% 감소

[표 2]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감률
지급인원(명)	190,329	173,733	161,577	146,932	132,479	-8.7

자료: 국가보훈부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 -8.7%를 적용하여 추계기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수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3]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증감률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	100,955	92,212	84,227	76,933	70,270	-8.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급단가

- 최근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

[표 4]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월 지급액	300	320	340	350	390	420	7.0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연평균증가율 7.0%를 적용하여, 현행법 적용 시 추계기간 동안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5]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추정: 2026~2030년

(단위: 천원,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증감률
월 지급액	481	515	551	590	632	7.0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최근 5년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

[표 6]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추이: 2020~2024년

(단위: 천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기준중위소득	1,757	1,828	1,945	2,078	2,228	6.1

자료: 보건복지부

□ 최근 5년간 기준 중위소득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기준 중위소득의 30%는 아래 표와 같음

[표 7]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추정: 2026~2030년

(단위: 천원,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증가율
기준중위소득	2,510	2,663	2,826	2,999	3,182	6.1
30%	753	799	848	900	955	6.1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을 1인가구 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 지급단가는 아래 표와 같음

[표 8] 개정안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단가: 2026~2030년

(단위: 천원)

	2026	2027	2028	2029	2030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0%(A)	753	799	848	900	955
현행법 적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B)	481	515	551	590	632
추가 월 지급단가(A-B)	272	284	297	310	323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가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라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2026~2030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1조 5,738억원으로 추계됨

[표 9]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명)	100,955	92,212	84,227	76,933	70,270	-8.7
추가 월 지급단가(천원)	272	284	297	310	323	-
추가재정소요(억원)	3,293	3,141	2,997	2,859	2,724	15,015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수급권 승계(안 6조의2)

(1) 대상자 수

-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승계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승계 배우자 인원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가 감소한 만큼 참전유공자 사망자 수로 가정하고, 사망자 수에 유배우자율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신규 미망인 수를 추정
 - 전년도 미망인 수 누계에 배우자사망률을 적용하고 신규 미망인 수를 더하여 당해연도 미망인 수 누계를 추정
 - 참전유공자 유배우자율은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 72.1%, 배우자의 사망률

은 무공수훈자 배우자 사망률 8.1%를 적용함

[표 10] 참전명예수당 수급 배우자수 추정: 2026~2030

(단위: 명)

배우자 승계	2026	2027	2028	2029	2030
전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100,955	92,212	84,227	76,933	70,270
추정 사망자 수	9,572	8,743	7,986	7,294	6,662
신규 미망인 수	6,901	6,304	5,758	5,259	4,804
미망인 누계	6,901	12,646	17,379	21,231	24,314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급단가

-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는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 가정

[표 11]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추정: 2026~2030년

(단위: 천원,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증가율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0%	753	799	848	900	955	6.1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가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8,681억원으로 추계됨

[표 12]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참전명예수당 수급 배우자 수(명)	6,901	12,646	17,379	21,231	24,314	—
지급단가(천원)	753	799	848	900	955	—
추가재정소요(억원)	624	1,212	1,768	2,292	2,785	8,681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다. 배우자 의료지원(안 제7조)

(1) 지원대상

- 개정안은 진료비용 감면부분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에서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위탁병원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해 보훈병원¹⁾은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상별 감면비율(30~60%)을 적용하여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병원에 대해서는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만 본인부담진료비에 대상별 감면비율 60%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음

[표 13]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진료지원 제도 현황

의료기관	진료대상	지원범위
보훈병원 (전국 6개)	▶ 국가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60% ▶ 본인 부담 진료비에 대상별 감면비율(30~60%)을 적용한 금액 지원 (비급여, 원외 처방 약제비 포함)
위탁병원	▶ 유족 -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 유족인 경우	▶ 본인 부담 진료비에 대상별 감면비율(60%)을 적용한 금액 지원 (비급여, 원외 처방 약제비 미지원)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에 따라, 현행법과 개정안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여부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신규대상 산정 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이외에 보상금, 고엽제수당,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도 포함²⁾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는 동법 제42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보훈병원만을 지정하였음.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이 받는 보상금, 무공수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경우, 보훈병원은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 수당 수급자 유가족이 신규지원 대상이며, 위탁병원은 보상금 수급자를 제외한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무공영예수당 수급자의 유가족이 신규지원 대상임

[표 14] 현행법과 개정안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의료지원 비교

구분	보훈병원		위탁병원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참전명예수당	미지원	지원	미지원	75세 이상 지원
보상금	지원	지원	75세이상 지원	75세 이상 지원
고엽제수당	미지원	지원	미지원	75세 이상 지원
무공영예수당	지원	지원	미지원	75세 이상 지원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보상금, 고엽제수당 등 보훈급여금을 받는 참전유공자는 2023년말 기준 총 22만 7,072명임

[표 15] 보훈급여금 종류별 참전유공자 수: 2023

(단위: 명)

	참전명예수당	보상금	고엽제수당	무공영예수당	합계
인원	132,479	54,632	31,645	8,316	227,072

자료: 국가보훈부

- 2023년말 기준 보훈급여금 종류별 참전유공자 수에 최근 5년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연평균 증감률 -8.7%를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참전유공자 수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훈자가 받는 무공영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받는 고엽제 수당 대상자가 되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상기 보상금 및 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도록(이후 “병급금지”) 규정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않고 보상금, 무공영예수당, 고엽제 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도 있음

[표 16] 보훈급여금 종류별 참전유공자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참전명예수당	100,955	92,212	84,227	76,933	70,270
보상금	41,632	38,027	34,734	31,726	28,978
고엽제수당	24,115	22,027	20,119	18,377	16,785
무공영예수당	6,337	5,788	5,287	4,829	4,4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 72.1%를 적용하여, 보훈급여금 종류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를 추정하고,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의료지원을 받은 대상자 수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 또한, 개정안은 위탁병원의 경우 75세 이상 배우자에 대해 의료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중 75세 이상 비율 87%를 적용하여, 위탁병원 신규지원 대상자 산정

[표 17] 개정안에 따른 신규 의료지원 대상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배우자	참전명예수당(A)	72,789	66,485	60,727	55,468	50,665
	보상금	30,017	27,417	25,043	22,874	20,893
	고엽제수당(B)	17,387	15,881	14,506	13,250	12,102
	무공영예수당(C)	4,569	4,173	3,812	3,482	3,180
개정안에 따른	보훈병원 (A+B)	90,176	82,366	75,233	68,718	62,767
신규지원 대상	위탁병원 (A+B+C)*0.866	82,057	74,951	68,460	62,531	57,116

주: 1) 배우자는 생존 참전유공자 수에 유배우자율(72.1%)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위탁병원의 경우, 참전유공자 중 75% 이상 비율 86.6%를 적용 산정하였음

2) 소숫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원단가

□ 국가유공자 유족의 진료횟수 및 진료단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8] 국가유공자 유족의 진료횟수 및 지원단가 현황

(단위: 회, 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보훈병원	수진횟수	0.6	0.6	0.6	0.6	0.6	0.0
	진료단가	53,864	62,974	64,394	66,795	67,249	5.7
위탁병원	수진횟수	12.1	10.1	8.4	8.3	8.7	-7.9
	진료단가	19,591	21,721	20,261	24,360	22,756	3.8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유족의 진료횟수 및 진료단가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진료횟수 및 진료단가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19] 국가유공자 유족의 진료횟수 및 지원단가 추정: 2026~2030년

(단위: 회, 원,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보훈병원	수진횟수	0.6	0.6	0.6	0.6	0.6	0.0
	진료단가	79,428	83,960	88,750	93,814	99,166	5.7
위탁병원	수진횟수	6.8	6.3	5.8	5.3	4.9	-7.9
	진료단가	25,461	26,432	27,441	28,488	29,574	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가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경우, 지원대상, 수진횟수, 진료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751억 6,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0] 의료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훈병원	4,298	4,149	4,006	3,868	3,735	20,056
위탁병원	14,193	12,393	10,821	9,449	8,250	55,105
합계	18,490	16,542	14,827	13,317	11,985	75,161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 인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의료지원 확대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추가재정소요는 2조 4,448억원(연평균 4,890억원)으로 추계됨

[표 2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수당 인상	3,293	3,141	2,997	2,859	2,724	15,015	3,003
배우자 승계	624	1,212	1,768	2,292	2,785	8,681	1,736
의료지원	185	165	148	133	120	752	150
합계	4,102	4,519	4,914	5,284	5,629	24,448	4,8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개정안 시행 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이후부터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